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64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서천호 · 조은희 · 우재준

김은혜 · 김용태 · 엄태영

정성국 · 이만희 · 김민전

서지영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

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③ (생 략)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2.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2 031년 12월 31일-----.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